

도로법(운행제한)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 공시송달 공고

「도로법」 제77조(차량의 운행제한)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가산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바, 「국세기본법」 제11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2018년 05월 03일

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

1. 건 명 : 도로법(운행제한)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 공시송달 공고
2. 근 거 : 도로법 제77조, 제1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, 제24조
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3. 공고대상

연번	고 지 번 호	적 발 자	성 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금액(원)	위반차량
1	01-95-1730-5102-6003-120	2017-10-26	임*식	7802**-1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117-508-605호 (양덕동, 포항장량5단지NH아파트)	1,060,000 (가산금 포함)	경북06도8449
2	01-95-1630-5101-7002-121	2016-10-17	채*학	6604**-1*****	강원도 동해시 구미택지7길 18 205호 (구미동)	100,000	강원06로5652
3	01-95-1730-5040-6001-121	2017-04-06	김*수	7011**-1*****	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5443 1층 101호 (평릉동)	350,000	강원07고5575
4	01-95-1830-5020-6001-120	2018-02-06	김*민	7202**-1*****	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남3길 14	500,000	강원06로5655
5	01-95-1830-5030-3001-120	2018-03-03	정*현	7512**-1*****	강원도 동해시 신당1길 6(동회동) 북상빌라 104호	1,000,000	충북06도7873
6	01-95-1730-5122-4001-141	2017-12-24	오*경	7609**-1*****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69번길 12-23,2층(반송동)	168,000	경남82사1856
7	01-95-1730-5122-4001-142	2017-12-24	오*경	7609**-1*****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69번길 12-23,2층(반송동)	166,000	경남82사1856
8	01-95-1730-5122-4001-143	2017-12-24	오*경	7609**-1*****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69번길 12-23,2층(반송동)	166,000	경남82사1856

4. 공고기간 : 2018년 05월 03일 ~ 2018년 05월 17일까지 (15일)

5. 공고내용

「도로법」 제77조(차량의 운행제한)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가산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바, 「국세기본법」 제11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6. 이의제기 및 가산금 안내

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과태료고지서 납부기한까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로 우편(강원 강릉시 경강로 1247) 및 팩스(033-650-8862)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)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% 가산금을 부과하고, 가산금이 포함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.

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최고 72%의 증가산금이 부과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포함된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,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공고내용에 이의가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이 종료하면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7. 공고 확인 및 기타문의

- 인터넷 공고 :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공시송달 공고
<http://www.roadfine.go.kr>
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(공고)
<http://wcmo.molit.go.kr>
- 게시판 공고 :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정문 옆 게시판
- 기 타 문 의 :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과태료 수납담당(033-650-8808)